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599호
- 나.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20년 5월 25일
- 라. 회부일자 : 2020년 6월 10일

2. 제안이유

- 가. 우리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 나.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체육진흥기금 사업비를 감액하고 이를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경제 지원대책 추진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 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비 감액내역 : 총 4개 세부사업, 330백만원 감액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세부사업	조정내역		
	당초(A)	변경(B)	증감(B-A)
체육진흥기금(총합)			△330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125
체육 소외계층 재능나눔 사업	200	185	△15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601	491	△110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198
생활체육진흥 활성화 시·구 공동협력사업	198	0	△198
행정운영경비			△7
기금관리비	10	3	△7

나.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계획(A)	1차변경(20)	2차변경(B)	증감(B-A)
계	12,499	13,534	13,534	1,035
전입금	8,612	8,612	8,612	-
이자수입	1,266	1,266	1,266	-
예치금수회	2,621	3,656	3,656	1,035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계획(A)	1차변경(20)	2차변경(B)	증감(B-A) (증감률)
계	12,499	13,534	13,534	1,035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8,811	8,811	8,686	△125 (△1.4%)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3,272	3,272	3,074	△198 (△6.1%)
행정운영경비	10	10	3	△7 (△70.0%)
일반예산(재무활동)	406	1,441	1,771	1,365 (336.3%)

※ 1차 변경사유 : 2019 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예산(재무활동) 중 여유자금 예치금 1,035백만원 증액¹⁾
(제1차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20.2.20.)

1) 일반예산(재무활동)이 당초 4억 6백만원에서 14억 4천1백만원으로 10억 3천5백만원(254.9%) 증가한 1차 변경 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이유는 결산시점에서 당해연도 집행잔액으로 인해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예치금보다 많은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예치금으로 자동합산하기 때문임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315).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2020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에 의해 의안번호 제1599호로 제출되어 2020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나. 변경계획안 검토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의 지출금액이 20% 이상 변경될 경우에는 동법 제11조3)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함.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지출계획중 총 4개의 세부사업, 3억 3천만원을 감액⁴⁾하는 것임.

〈세부사업 감액내역〉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세부사업	조정내역		
	당초(A)	변경(B)	증감(B-A)
체육진흥기금(총합)			△330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125
체육 소외계층 재능나눔 사업	200	185	△15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601	491	△110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198
생활체육진흥 활성화 시·구 공동협력사업	198	0	△198
행정운영경비			△7
기금관리비	10	3	△7

- 2)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3)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4) 체육 소외계층 재능나눔 사업(1천5백만원 감액),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1억 1천만원 감액), 생활체육진흥 활성화 시·구 공동협력사업(1억 9천8백 감액), 기금관리비(7백만원 감액)

이를 정책사업 기준으로 정리하면,

- ①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을 당초 88억 1천1백만원에서 86억 8천6백만원으로 1억 2천5백만원(1.4%) 감액하고,
- ②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을 당초 32억 7천2백만원에서 30억 7천4백만원으로 1억 9천8백만원(6.1%) 감액하며,
- ③ 행정운영경비를 당초 1천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7백만원(70%) 감액하고,
- ④ 일반예산(재무활동)을 당초 4억 6백만원에서 17억 7천1백만원으로 13억 6천5백만원(336.3%) 증액⁵⁾하는 것이며,

〈정책사업별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세부사업	조정내역			
	당초(A)	1차변경	2차변경(B)	증감(B-A)
계	12499	13,534	13,534	1,035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8,811	8,811	8,686	△125 (△1.4%)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3,272	3,272	3,074	△198 (△6.1%)
행정운영경비	10	10	3	△7 (△70%)
일반운영비	406	1,441	1,771	1,365 (336.3%)

이 중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은 지출금액이 20% 이상이 변경되는 ③ 일반예산(재무활동) 증액과 ④ 행정운영경비 감액임.

5) 실제로는 2차변경 17억 7천1백만원과 1차변경 14억 4천1백만원의 차액 3억 3천만원(22.9%) 증액임.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 지출계획 구조〉

조직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체육정책과	체육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전문체육 육성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
				학교체육부 창단 육성
				전문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선수단 창단 지원
				자치구 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
				태릉라이플사격장 운영 지원
				봉황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개최 지원
			서울 승마스포츠 육성사업	
생활체육 육성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체육 소외계층 재능나눔 사업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시민체육공간 확충	야구장 시설 개보수			
	고척스카이돔 시설 개선			
일반예산(재무활동)	보전지출	여유자금 예치		
기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체육진흥과	체육	시민생활체육 진흥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전통종목 강습 및 대회 운영
				생활체육진흥 활성화 시·구 공동협력사업
				서울시 어르신 축구대회 개최지원
				서울컵 전국유소년야구대회 개최 지원
				찾아가는 스포츠검진센터 운영

/